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중 “지원센터”를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및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9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10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5조제2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9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지원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 -----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 구역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 ----- 대전광역시----- ----- -----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소기업청장-----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생략) 1. ~ 8. (생략) 9. 산업자원부장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생략)	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및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현행과 같음)
제9조(재산출연) 시장은 <u>지방재정법 제14조</u> 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재산출연) --- 「 <u>지방재정법</u> 」 제17조 ----- ----- ----- ----- ----- -----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시장은 <u>지방자치법 제95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 「 <u>지방자치법</u> 」 제104조 ----- ----- ----- ----- -----

관계법령

①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종합지원센타"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중소기업정책본부) ①중소기업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정책본부에 정책총괄팀·혁신기업팀·기업협력팀·조합지원팀·국제협력팀 및 동향분석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전망 및 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5.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8.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9.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0.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제조업 공동화 대책의 수립
13. 근로시간의 단축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리·감독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⑦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